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5년 1월 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기술개발과 유법민 과장, 이맹섭 주무관(044-203-4527)

산업부, 한국-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'15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공고

- 2. 8.(일)까지 한·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를 통해 접수 -

- 과제별 양국 기업 합계 최대 100만 달러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 해외 시장진출 확대하기 위한 **「한국-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」의 2015년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이스라엘 경제부와 함께 공고**했다.

○ 두 나라는 **'99년 조약*을 체결** 후 전담기관인 '한국-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(KORIL-RDF)'을 '01년 설립하고, 각 각 **연간 200만 달러씩(총 400만 달러) 공동 기금을 적립**해 양국 기업의 공동 연구·개발(R&D)을 지원하고 있다.

* 운영근거: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정부 간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(조약1,758호)

□ **한국-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분야**는 화학, 기계, 나노, 신재생에너지 등 **사업화가 가능한 모든 산업기술분야**다.

○ 과제별 지원기간은 **3년 이내이며**, 두 나라 기업합계 정부출연금 **최대 100만 달러 이내**로 지원할 수 있다.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* 최근 3년간 과제 지원내역 : ('12) 7개, ('13) 5개, ('14) 7개

- 다만, 정부지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 **기술전문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**하고, **양국기업 중 한 국가의 기업 예산비율이 최대 70%를 초과할 수 없다.**

<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>

평가등급	A	B+	B	B-	C
정부출연금 지원비율	50%	45%	40%	35%	30%
최대지원금	100만 달러	90만 달러	80만 달러	65만 달러	50만 달러

* 평가결과 A일 경우: 과제예산의 50% 혹은 100만 달라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.

□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. **8.까지 한국-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에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제출**해야 한다.

○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현장방문 등 양국의 기술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**한국-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**('15. 5. 예정)**에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**한다.

○ 단,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인 **소형과제**와 연구개발·사업화 적합성을 검증하는 **타당성 과제**는 **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.**

<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>

지원유형	정부지원금 (양국 합계)	민간부담금	지원기간	과제내용
소형과제 (Mini-Scale Project)	최대 미국 달러 100,000	정부지원금의 50%	1년 이내	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
타당성검토과제 (Feasibility study Project)	최대 미국 달러 30,000	정부지원금의 50%	3개월 이내	기술적합성, 사업화 가능성 조사 과제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-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 (http://www.koril.org)와 붙임 파일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.

※붙임: 2015년 한-이스라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고문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맹섭 주무관(☎ 044-203-4527)과 한-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진수미 팀장(☎ 02-6009-824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붙임 1 2014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신규 공고 내용

Ⅰ 사업개요

1. 사업내용

○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

2. 지원분야

○ 전기전자, 신소재, 화학, 환경, 나노, 기계, 생명공학,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

Ⅱ 지원내용

1. 신청자격(주관기관) :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

○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

○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

2.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

지원유형	정부지원금 (양국 합계)	민간부담금	지원기간	과제내용
대형과제 (Full-Scale Project)	최대 US $ 1,000,000	총 프로젝트 예산의 50% 이상	3년 이내	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
소형과제 (Mini-Scale Project)	최대 US $ 100,000	총 프로젝트 예산의 50%	1년 이내	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
타당성검토과제 (Feasibility study Project)	최대 US $ 30,000	총 프로젝트 예산의 50%	3개월 이내	기술적합성,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

○ **R&D연구개발비용 최대 100만불 지원 (대형과제 기준, 양국 기업 합계)**

-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예산을 합산하여 제출함
- 양국의 예산 비율은 최대 7:3 까지 인정 (한쪽 기업이 최소 30%의 예산 차지)
-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(대형과제에 한함)
 (3.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기준 참고)

3.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

평가등급	A	B+	B	B-	C
정부출연금 지원비율	50%	45%	40%	35%	30%
최대지원금	100만불	90만불	80만불	65만불	50만불

1) 최대지원금은 양국 기업 합계임
2) (예시) 평가결과 A일 경우: 과제예산의 50% 혹은 100만불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함

4. 제한조건

○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○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
○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등)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, 금융기관 등이 신용거래 불량자(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)
○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'공통운영요령'상 지원제외,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
5.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

○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최소 2.5%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%까지 상환
*** 단,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**
***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최대 50% 감면혜택 부여**

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

1. 지원절차 및 일정

○ 매년 2회 대형과제 신규과제접수, 소형/타당성 과제는 연중 수시접수
○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,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
○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(40%)을 선지급하고,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(30%),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(30%)을 단계적으로 지급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구분	일정	비고
신규 사업 공고	'14. 1. 5	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
사업계획서 접수	'15. 2. 8	대형 (연2회) 소형, 타당성(연중 수시)
접수과제 사전검토	2월 중	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
과제 심층 평가	3월~4월	국가별 개별 평가 (현장실태조사, 평가위원회)
과제 선정(이사회)	5월 예정	최종 심의
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	6월 예정	한국기업↔이스라엘기업↔한이재단

2. 신청요령

가.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
○ 양식교부 :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(www.koril.org)
- 한국·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Ⅲ.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 (다운로드 가능)
*** 한이재단 홈페이지(www.koril.org) → KOREAN(한글홈페이지로 이동) → 사업소개 → KORIL Guidelines & Forms → 사업운영요령 → Handbook(6th Edition)**
○ 접 수 처 : 양국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-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(워드 양식)
-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
○ **접수기한 : 2015년 2월 8일(일)까지 (대형과제)**
- 소형 및 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
○ 접수 및 문의처

전담기관	문의처
한국 본부 사무소	· 전화 : 02) 6009-8253 · 담당자: 최정인 연구원, ena@koril.org
이스라엘 사무소	· 전화 : +972-3-511-8183 · 담당자 : Ms. Deborah Schabes, Israel Manager dvora@matimop.org.il

나. 평가지표
- Capability of Company : 주관기관의 기술력, 적정시스템 및 장비 보유, 재정능력 등
- Technology : 개발기술의 혁신성, 연구수행 능력,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등
- Business Opportunities : 시장진입 가능성, 경쟁력 향상,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
- Benefit to both Economies :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가능성, 경제성 및 파급성 등

3. 근거법령 및 규정

가. 근거법령 : 「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 협정(2005.12, 발효)」

나. 관련규정

○ KORIL-RDF HANDBOOK (6th Edition) : 한국·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

4. 유의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새로운 기술개발 없이 상대국 기업의 단순 용역(시험, 조립 등), 위탁과제 성격의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